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1. 12. 20.

사회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11년 11월 14일

나. 발 의 자 : 김길자 의원 외 4명

다. 회부일자 : 2011년 11월 16일

라. 상정일자 : 제164회 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8차 회의(2011년 12월 12일)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 김길자 의원)

가. 제안이유

-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영유아플라자의 설치 및 운영근거 마련 등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개정하고자 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른 관련 용어 정비(안 제2조 외 15개조)
- 보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4조)
- 영유아플라자의 설치 및 운영근거, 주요기능 규정(안 제12조제1항, 안 제13조제2항)
- 보육교직원의 임면 등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26조)
-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회의 등에 관한 사항 일부보완 및 신설(안 제28조)
-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용어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안 제1조 외 19개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 박종성)

가.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어가 개정됨에 따라 관련된 용어를 정비하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영유아플라자의 설치 및 운영근거 마련 등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임.

나. 주요내용

- 「영유아보육법」에서 사용되었던 보육시설,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시설 종사자의 용어가 각각 어린이집, 어린이집의 원장, 보육교직원으로 변경되어 이를 개정안에 반영함(안 제2조 외 15개조).
- 보육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보육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화하고, 필요한 경우 공청회 등을 통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육사업의 내실화를 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안 제4조).
- 2009년도부터 영등포구 보육정보센터 내에 설치·운영하고 있는 영유아 플라자의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주요기능을 신설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안 제12조제1항, 안 제13조제2항).
- 또한 어린이집에 종사하는 보육교직원의 임면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상위법에서 정한 자격을 가진 자를 공개 채용하여 구청장이 임명하도록 규정함(안 제26조).
- 어린이집의 운영과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한 보육을 실시하기 위해 설치된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위원수를 기존 5인 이상으로만 명시되어 있던 것을 5인 이상 10인 이하로 명확히 규정하고, 회의운영 및 심의사항 등을 보완 신설함(안 제28조).

4. 수정안 요지

가. 수정 이유

- 보육정책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의 간사를 “가정복지과장”에서 “보육지원담당주사”로 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용어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수정함.

나. 주요 골자

- 안 제2조 제4호 중 “자”를 “사람”으로,
- 같은 조 제5호 중 “자로서”를 “사람으로서”로,
- 안 제6조 제2항 중 “자”를 “사람”으로,
- 안 제6조 제4항 중 “가정복지과장으로”을 “보육지원담당주사로”로,
- 안 제14조 제3항 중 “자”를 “사람”으로,
- 안 제19조 제3항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자”를 “사람”으로,
- 안 제26조 제1항 중 “자로서”를 “사람으로서”로,
- 안 제32조 중 “자가”를 “사람이”로 함.

5. 심사결과 : 수정안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84호
----------	-----------

제안년월일 : 2011.12.

제출자 : 이재형 위원 외 1명

1. 수정 이유

- 보육정책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의 간사를 “가정복지과장”에서 “보육지원담당주사”로 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용어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수정함.

2. 주요 골자

- 안 제2조 제4호 중 “자를”을 “사람을”로,
- 같은 조 제5호 중 “자로서”를 “사람으로서”로,
- 안 제6조 제2항 중 “자”를 “사람”으로,
- 안 제6조 제4항 중 “가정복지과장으로”을 “보육지원담당주사로”로,
- 안 제14조 제3항 중 “자”를 “사람”으로,
- 안 제19조 제3항 중 “자느”을 “사람은”으로, “자를”을 “사람을”로,
- 안 제26조 제1항 중 “자로서”를 “사람으로서”로,
- 안 제32조 중 “자가”를 “사람이”로 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안 제2조 제4호 중 “자를” 을 “사람을” 로,
- 같은 조 제5호 중 “자로서” 를 “사람으로서” 로,
- 안 제6조 제2항 중 “자” 를 “사람” 으로,
- 안 제6조 제4항 중 “가정복지과장으로” 을 “보육지원담당주사로” 로,
- 안 제14조 제3항 중 “자” 를 “사람” 으로,
- 안 제19조 제3항 중 “자는” 을 “사람은” 으로, “자를” 을 “사람을” 로,
- 안 제26조 제1항 중 “자로서” 를 “사람으로서” 로,
- 안 제32조 중 “자가” 를 “사람이” 로 함.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보육시설의 위탁에 관한 사항 등은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 수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 보육법 (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이하 "구"라 한다) 보육의 공공성을 확대하며 영유아 및 아동의 보호와 교육의 질 향상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영유아보육법 ----- ----- <u>따라</u> ----- ----- ----- <u>사회 구성원</u> ----- ----- <u>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u>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라 함은 6세 미만의 취학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라 함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보육시설"이라 함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4. "보호자"라 함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u>자</u> 를 말한다. 5. "보육시설 종사자"라 함은 보육 시설에서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제2조(정의) ----- <u>뜻은</u> -----. 1. "영유아"란 ----- -----. 2. "보육"이란 ----- ----- ----- <u>맞는</u> ----- 제공하는 <u>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u> 사회복지서비스를 -----. 3. "어린이집"이란 ----- ----- <u>기관</u> -----. 4. "보호자"란 ----- ----- ----- <u>사람을</u> -----.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u>보육시설</u>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u>자로서</u> <u>보육시설의 장</u>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u>종사자</u>를 말한다. 6. "<u>방과 후 보육</u>" 이라 함은 맞벌이 부부의 자녀 등 방과 후 보호가 필요한 초등학교 아동들을 중심으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u>어린이집</u>----- --<u>사람으로서</u>-- <u>어린이집의 원장</u> - -----<u>직원을</u>-----. 6. "<u>방과 후 보육</u>" 이란 ----- ----- ----- -----.
제3조(책임) ① (생략) ② 구청장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u>적정한 보육시설</u>을 확보하여야 한다. <u><신설></u>	제3조(책임) ① (현행과 같음) ② ----- <u>적절한 어린이집</u>-----. ③ <u>보육교직원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구 보육정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u>
<u><신설></u>	<u>제4조(보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구청장은 보육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육사업의 기본방향, 어린이집의 설치 및 수급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보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u> <u>② 보육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공청회 등을 통해 구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u>
제2장 보육정책위원회 <u>제4조(설치)</u>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u>제5조(구성)</u>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2장 보육정책위원회 <u>제5조(설치)</u> -----<u>따라</u> ----- -----. <u>제6조(구성)</u> ① ----- ----- 1명-----15명 이하의 -----.

②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u>각호의 1</u>에 해당하는 <u>자</u>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생략) 2. <u>보육시설의 장</u> 및 보육교사 대표 3. ~ 5. (생략) ③ (생략) ④위원회에 간사 <u>1인</u>을 두되 간사는 <u>가정복지과장으로</u> 한다.	② ----- <u>각 호의 어느 하나</u> ----- <u>사람</u> ----- ----- . 1. (현행과 같음) 2. <u>어린이집의 원장</u> ----- 3. ~ 5.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 <u>1명</u>----- <u>보육지원담당주사로</u>----
<u>제6조(기능)</u> 위원회는 다음 <u>각호의 사항</u>을 심의한다. 1. <u>보육정보센터</u>의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 2. (생략) 3. <u>구립 보육시설</u>의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 4. <u>보육시설</u>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5. <u>보육시설 장</u>의 업무정지 및 보육교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 6. <u>방과 후 보육시설</u>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u>기타</u> 보육에 관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u>부 치는 사항</u>	<u>제7조(기능)</u>----- <u>각 호</u>----- ----- . 1. <u>보육정보센터</u>·<u>영유아플라자</u>의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 2. (현행과 같음) 3. <u>구립어린이집</u>----- ----- 4. <u>어린이집</u> ----- ----- 5. <u>어린이집 원장</u>----- ----- 6. <u>방과 후 어린이집</u> ----- ----- 7. <u>그 밖에</u> ----- -----<u>부치는 사항</u>
<u>제7조</u> (생략)	<u>제8조</u> (현행 제7조와 같음)
<u>제8조</u> (생략)	<u>제9조</u> (현행 제8조와 같음)
<u>제9조</u> (생략)	<u>제10조</u> (현행 제9조와 같음)
<u>제10조</u> (위원의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u>대하여는</u> 예산의	<u>제11조</u> (위원의 수당) ----- ----- <u>대해서는</u> -----

<u>범위 안에서</u>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u>범위에서</u> -----. ----- ----- -----.
제3장 <u>보육정보 센터 설치 및 운영</u>	제3장 <u>보육정보센터·영유아플라자</u> <u>설치 및 운영</u>
<u>제11조(설치 및 운영)</u> ①구청장은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u>보육정보센터</u>(이하 "보육정보센터"라 한다)를 <u>설치·운영한다</u>. ②·③ (생략)	<u>제12조(설치 및 운영)</u> ① ----- ----- -----<u>보육정보센터</u> <u>및 영유아플라자</u>----- -----<u>설치·운영하여야 한다</u>. ②·③ (현행과 같음)
<u>제12조(기능)</u> 보육정보센터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2. (생략) 3. <u>보육시설종사자</u>에 대한 상담 및 구인·구직 정보의 제공 4. <u>보육시설</u> 이용자에 대한 안내·상담 및 교육 5.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에 대한 정보의 제공 6.·7. (생략) 8. 구민의 보육수요 및 욕구조사, <u>보육시설</u> 이용실태 조사 9. <u>기타</u> 보육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u><신 설></u>	<u>제13조(기능)</u> ① ----- <u>각 호</u>-----. 1.·2. (현행과 같음) 3. <u>보육교직원</u>----- ----- 4. <u>어린이집</u> ----- ----- 5.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에 대한 <u>조력 및</u> 정보의 제공 6.·7. (현행과 같음) 8. ----- <u>어린이집</u> ----- 9. <u>그 밖에</u> ----- ----- <u>② 영유아플라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u> <u>1. 영유아 및 부모 포털사이트 구축</u>

	<u>2. 젊은 부모들의 모임 및 정보교환 장소 제공</u> <u>3. 부모들에게 단계별 양육방법, 놀이 지도 등 프로그램 운영</u> <u>4. 각종 생활체험을 통해 아동의 근육 발달 등 성장지원</u> <u>5. 자녀양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 상담 및 해결</u> <u>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u>
<u>제13조(구성) ①·② (생략)</u> ③보육전문 요원은 영 제15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u>자</u> 중에서 공개채용을 통해 구청장이 임면한다. 다만, 보육정보센터를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보육전문요원 및 <u>기타 종사자</u>는 보육정보센터의 장이 공개채용을 통해 <u>임면후구청장에게보고</u> 하여야 한다. ④ (생략) <u><신설></u>	<u>제14조(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u> ③ ----- <u>각 호의 어느 하나</u>-----<u>사람</u> ----- ----- ----- ----- <u>그 밖의</u> ----- ----- -----<u>임면 후 구청장에게 보고</u> ----- -----. ④ (현행과 같음) <u>⑤ 보육정보센터의 장은 영유아플라자의 장을 겸임할 수 있다.</u>
<u>제14조 (생략)</u>	<u>제15조 (현행 제14조와 같음)</u>
<u>제15조 (생략)</u>	<u>제16조 (현행 제15조와 같음)</u>
<u>제4장 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u>	<u>제4장 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u>
<u>제16조(구립 보육시설의 설치)</u>	<u>제17조(구립어린이집의 설치)</u>
①구청장은 <u>구립보육시설</u>을 설치할 때에는 보육 수요와 시설수를 감안하여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① ----- <u>구립어린이집</u>----- ----- ----- -----

가급적 1개동에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보육수요 조사를 실시하여 일정한 수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u>구립보육시설에 장애아 보육시설과 야간보육시설</u>을 설치할 수 있다.	----- -----. ② ----- ----- ----- <u>구립어린이집</u>-- <u>장애아 어린이집</u>-- <u>야간어린이집</u>----- -----.
제17조(구립보육시설의 명칭) 구에서 설치하는 <u>보육시설</u>의 명칭은 "구립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18조(구립어린이집의 명칭)----- ----- <u>어린이집</u>----- -----.
제18조(위탁운영) ①구청장은 법 제24조의 <u>규정에 의하여 구립보육시설</u>을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위탁은 공개경쟁의 <u>방법에 의한다</u>. ②<u>구립보육시설</u> 위탁의 경우 수탁 운영자의 선정기준 및 공개모집에 관한 <u>내용 방법과 절차</u> 등에 대하여는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③<u>구립보육시설</u>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u>자</u>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자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u>자</u>를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 라 한다)로 지정한다. ④제3항의 <u>규정에 의한</u> 위원회의 심의항목에는 보육관련사업 운영 실적, 수탁자의 공신력 및 재정능력, <u>보육시설</u> 운영계획, 대표자 및 <u>보육 시설장</u>의 전문성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심의항목 배점 및 절차 등	제19조(위탁운영) ① -----제24조에 따라 <u>구립어린이집</u>----- ----- ----- -----<u>방법으로 한다</u>. ② <u>구립어린이집</u> ----- ----- -----<u>내용, 방법과</u>----- -----. ③ <u>구립어린이집</u>----- -----<u>사람은</u>----- ----- -----<u>사람을</u>----- -----. ④ 제3항에 따른----- ----- ----- -----<u>어린이집</u> -----<u>어린이집 원장</u>----- -----

구체적 내용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한다.	----- -----.
제19조(위탁계약) 구청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중 관리책임 및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하며 시설의 보호와 <u>적절한</u>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한할 수 있다.	제20조(위탁계약) ----- ----- 그 밖에 ----- ----- <u>적절한</u> ----- -----.
제20조 (생 략)	제21조 (현행 제20조와 같음)
제21조(수탁자의 의무) ①수탁자는 <u>보육시설</u> 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 <u>의한</u> 규정 및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u>구립 보육시설의 장</u> 은 영아장애아 시간연장형 보육 등 취약보육을 우선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보육의 우선 제공을 준수하고 관내거주아동을 <u>우선보육</u> 하여야 한다. ③ ~ ④ (생략) ⑤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⑥ · ⑦ (생략)	제22조(수탁자의 의무) ① ----- <u>어린이집</u> ----- ----- <u>따른</u> ----- -----. ② <u>구립어린이집의 원장</u> ----- ----- ----- ----- ----- <u>우선 보육</u> 하여야-----. ③ ~ ④ (현행과 같음) ⑤ ----- ----- ----- -----. ⑥ · ⑦ (현행과 같음)
제22조 (생 략)	제23조 (현행 제22조와 같음)
제23조(위탁의 취소) ①구청장은 위탁 <u>기간중</u> 이라도 다음 <u>각호의 1</u> 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제24조(위탁의 취소) ① ----- <u>기간 중</u> ----- <u>각 호의 어느 하나</u> ----- ----- <u>발생한 경우에는</u> ----- -----.

1.~5. (생략) ② · ③ (생략)	1.~5.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24조(지도감독) ① (생략) ②구청장은 제1항에 의한 지도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지시, 경고, <u>종사자</u> 의 해임 요구 및 변상, 위탁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5조(지도감독) ① (현행과 같음) ② ----- <u>따른</u> ----- ----- <u>보육교직원</u> ----- -----.
<u><신설></u>	제26조(보육교직원의 임면 등) <u>① 구립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은 법 제21조에 따른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공개채용을 통해 구청장이 임면한다. 다만, 시설을 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보육교직원은 해당 법인 등의 대표가 임면한다.</u> <u>②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육교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u>
제25조(보육시설 운영위원회의 설치) <u>보육시설의 장은 보육시설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여 지역실정과 특성에 맞는 보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보육 시설에 보육시설운영위원회</u> (이하 "운영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27조(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설치) <u>어린이집의 원장은 어린이집</u> ----- ----- ----- ----- <u>어린이집에 어린이집운영위원회</u> ----- -----.
제26조(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①운영위원회는 <u>당해 보육시설의 장,</u> 보육교사 대표, 학부모 대표 및 지역 사회 인사를 포함한 <u>5인 이상의</u>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28조(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① --- ----- <u>해당 어린이집의 원장,</u> ----- ----- <u>5명 이상 10명 이하의</u> -----.

②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u>보육시설 종사자</u>가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u><신 설></u> <u><신 설></u> ③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u>보육시설</u> 운영 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2. <u>보육시설</u>의 예산 및 <u>결산</u>에 관한 사항 3. (생 략) 4. 그 밖에 <u>보육시간</u> 등 <u>보육시설</u>의 운영에 관한 사항 <u><신 설></u> <u><신 설></u>	② -----<u>보육교직원</u>이 -----. ③ <u>운영위원회</u>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u>운영위원회</u> 회의는 <u>운영위원 3명</u> 이상의 요청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할 수 있다. ⑤ ----- -----. 1. <u>어린이집</u> ----- ----- 2. <u>어린이집</u> ----- <u>결산</u>의 보고에 ----- 3. (현행과 같음) 4. <u>보육시간</u>, <u>보육과정</u>의 <u>운영 방법</u> 등 <u>어린이집</u>----- 5. 그 밖에 <u>어린이집</u>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⑥ <u>운영위원회</u>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u>운영위원회의 의결</u>을 거쳐 <u>회의운영 규칙</u>으로 정한다.
제5장 방과 후 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제27조(방과 후 보육시설의 설치) 구청장은 <u>방과 후 보육시설</u>을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되 기존의 <u>영유아 보육시설</u>, <u>사회복지사업법상</u>의 복지시설, 종교시설 및 학교시설 등을 증·개축 또는 개·보수 하여 설치할 수 있다.	제5장 방과 후 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제29조(방과 후 어린이집의 설치) ----- <u>방과 후 어린이집</u>----- ----- ----- <u>영유아 어린이집</u>, 「<u>사회복지사업법</u>」에 따른 <u>사회복지시설</u>----- ----- ----- <u>개·보수</u>하여-----.

제28조(보육시설 기준) 방과 후 보육 시설이 갖추어야 할 시설기준 및 운영기준은 「영유아 보육법 시행 규칙」 제9조 및 제23조에 의한다.	제30조(어린이집 기준) 방과 후 어린이집-----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따른다.
제6장 비용	제6장 비용
제29조(비용의 보조 등) 구청장은 다음 각호에 정한 보육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보육시설의 설치, 증·개축 및 개·보수비 2.~4. (생략) 5. 보수교육 등 교육훈련 비용 6. (생략) <u><신설></u> <u><신설></u> 7. 기타 구청장이 영유아 보육의 활성화 및 보육시설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제31조(비용의 보조 등) ----- 각 호-----어린이집 ----- ----- 범위에서 -----. 1. 어린이집----- ----- 2.~4. (현행과 같음) 5. 보육교직원의 보수교육 등 교육훈련 비용 6. (현행과 같음) 7. 보육교직원의 사기 진작과 처우 개선에 필요한 비용 8. 보육프로그램의 개발비용 9. 그 밖에 ----- ----- 어린이집----- ----- -----
제30조(보육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 등) ①구청장은 교사연수, 선진지 견학등 보육시설 종사자의 사기진작과 처우 개선에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보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영유아 보육의 질적 향상에 노력하여야 하며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u><삭제></u>

제31조(보조금의 반환) 구청장은 <u>보육 시설</u>을 운영하는 <u>자가</u> 다음 <u>각호</u>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 2. (생략) 3. 허위 <u>기타</u>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	제32조(보조금의 반환) ----- <u>어린 이집</u>-----<u>사람이</u>----- <u>각 호</u>의 어느 하나----- -----. 1. · 2. (현행과 같음) 3. ---- <u>그 밖의</u>-----
제7장 보 칙	제7장 보칙
<u>제32조</u> (생 략)	<u>제33조</u> (현 행 제32조와 같음)
<u>제33조</u> (생 략)	<u>제34조</u> (현 행 제33조와 같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길자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84
----------	----

발의연월일 : 2011년 11월 일
발 의 자 : 김길자 의원 외 4명

1. 제안이유

「영유아보육법」에서 사용되고 있던 보육시설,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시설 종사자의 명칭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영유아플라자의 설치 및 운영근거 마련 등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른 관련 용어 정비(안 제2조 외 15개조).
- 나. 보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4조).
- 다. 영유아플라자의 설치 및 운영, 주요기능을 규정함(안 제12조제1항, 안 제13조제2항).
- 라. 보육교직원의 임면 등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26조).
- 마.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의 일부 보완 및 신설(안 제28조).
- 바.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용어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 및 띄어쓰기 등 정비(안 제1조 외 19개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영유아보육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입법예고(2011.10.28 ~ 11.2) 결과 : 의견없음

라. 규제심사 결과 : 해당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영유아 보육법」을 「영유아보육법」으로, “의하여”를 “따라”로, “사회성원”을 “사회 구성원”으로, “원활하게 함으로써”를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로 한다.

제2조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같은 조 제1호 중 ““영유아”라 함은”을 “영유아”란”으로, 같은 조 제2호 중 ““보육”이라 함은”을 ““보육”이란”으로, “적합한”을 “맞는”으로,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을 추가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보육시설”이라 함은”을 ““어린이집”이란”으로, “시설”을 “기관”으로, 같은 조 제4호 중 ““보호자”라 함은”을 ““보호자란”으로, 같은 조 제5호 중 ““보육시설 종사자”라 함은 보육시설”을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으로,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보육시설의 장”을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종사자를”을 “직원을”으로, 같은 조 제6호 중 ““방과 후 보육”이라 함은”을 ““방과 후 보육”이란”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적정한 보육시설”을 “적절한 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보육교직원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구 보육정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를 제5조로 하고,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보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구청장은 보육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육사업의 기본방향, 어린이집의 설치 및 수급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보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보육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공청회 등을 통해 구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5조(중전의 제4조)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5조를 제6조로 하고, 제6조제1항(중전의 제5조제1항) 중 “1인”을 “1명”으로, “15인 이내”를 “15명 이하”로, 같은 조 제2항(중전의 제5조제2항) 중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같은 조 제2항제2호(중전의 제5조제2항제2호) 중 “보육시설의 장”을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5조제4항) 중 “1인”을 “1명”으로 한다.

제6조를 제7조로 하고, 제7조(중전의 제6조) 중 “각호”를 “각 호”로, 제7조제1호(중전의 제6조제1호) 중 “보육정보센터”를 “보유정보센터·영유아플라자”로, 제7조제3호(중전의 제6조제3호) 중 “구립 보육시설”을 “구립어린이집”으로, 같은 조 제4호(중전의 제6조제4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같은 조 제5호(중전의 제6조제5호) 중 “보육시설 장”을 “어린이집 원장”으로, 같은 조 제6호(중전의 제6조제6호) 중 “방과 후 보육시설”을 “방과 후 어린이집”으로, 같은 조 제7호(중전의 제6조제7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부 치는 사항”을 “부치는 사항”으로 한다.

제7조를 제8조로, 제8조를 제9조로, 제9조를 제10조로 한다.

제10조를 제11조로 하고, 제11조(중전의 제10조) 본문 중 “대하여는”을 “대해 서는”으로, “범위 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한다.

제3장의 제목 “보육정보 센터 설치 및 운영”을 “보육정보센터·영유아플라자 설치 및 운영”으로 한다.

제11조를 제12조로 하고, 제12조제1항(중전의 제11조제1항) 중 “보육정보센터”를 “보육정보센터 및 영유아플라자”로, “설치·운영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2조를 제13조로 하고, 제13조(중전의 제12조)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제13조제1항제3호(중전의 제12조제3호) 중 “보육시설종사자”를 “보육교직원”으로, 같은 조 같은 항 제4호, 제8호(중전의 제12조제4호, 제12조제8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같은 조 같은 항 제5호(중전의 제12조제5호) 중 “조력 및”을 추가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9호(중전의 제12조제9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중전의 제12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영유아플라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영유아 및 부모 포털사이트 구축
2. 젊은 부모들의 모임 및 정보교환 장소 제공
3. 부모들에게 단계별 양육방법, 놀이지도 등 프로그램 운영
4. 각종 생활체험을 통해 아동의 근육발달 등 성장지원
5. 자녀양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상담 및 해결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를 제14조로 하고, 제14조제3항(중전의 제13조제3항)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기타”를 “그 밖의”로, “임면후구청장에게보고”를 “임면 후 구청장에게 보고”로 하고,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보육정보센터의 장은 영유아플라자의 장을 겸임할 수 있다.

제14조를 제15조로, 제15조를 제16조로 한다.

제4장의 제목 중 “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으로 한다.

제16조를 제17조로 하고, 제17조(종전의 제16조)의 제목 “(구립 보육시설의 설치)”를 “(구립어린이집의 설치)”로,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16조제1항) 중 “구립보육시설”을 “구립어린이집”으로,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6조제2항) 중 “구립보육시설”을 “구립어린이집”으로, “장애아보육시설”을 “장애아어린이집”으로, “야간보육시설”을 “야간어린이집”으로 한다.

제17조를 제18조로 하고, 제18조(종전의 제17조)의 제목 “(구립보육시설의 명칭)”을 “(구립어린이집의 명칭)”으로, 같은 조 본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18조를 제19조로 하고, 제19조제1항(종전의 제18조제1항) 중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립보육시설”을 “제24조 규정에 따라 구립어린이집”으로, “방법에 의한다”를 “방법으로 한다”로,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8조제2항),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18조제3항) 중 “구립보육시설”을 “구립어린이집”으로, “내용 방법과”를 “내용, 방법과”로,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18조제4항) 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3항에 따른”으로,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보육시설장”을 “어린이집 원장”으로 한다.

제19조를 제20조로 하고, 제20조(종전의 제19조) 중 “기타”를 “그 밖에”로, “적정한”을 “적절한”으로 한다.

제20조를 제21조로 한다.

제21조를 제22조로 하고, 제22조제1항(종전의 제21조제1항)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의한”을 “따른”으로,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21조제2항) 중

“구립 보육시설의 장”을 “구립어린이집의 원장”으로, “우선보육 하여야”를 “우선 보육하여야”로 한다.

제22조를 제23조로 한다.

제23조를 제24조로 하고, 제24조제1항(종전의 제23조제1항) 중 “기간중”을 “기간 중”으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발생되었을 때에는”을 “발생한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24조를 제25조로 하고, 제25조제2항(종전의 제24조제2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종사자”를 “보육교직원”으로 한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 (보육교직원의 임면 등) ① 구립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은 법 제21조에 따른 자격을 가진 자로서 공개채용을 통해 구청장이 임면한다. 다만, 시설을 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보육교직원은 해당 법인 등의 대표가 임면한다.

②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육교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를 제27조로 하고, 제27조(종전의 제25조)의 제목 “(보육시설 운영위원회의 설치)”를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설치)”로 같은 조 본문 중 “보육시설의 장은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의 원장은 어린이집”으로, “보육 시설에 보육시설운영위원회”를 “어린이집에 어린이집운영위원회”로 한다.

제26조를 제28조로 하고, 제28조제1항(종전의 제26조제1항) 중 “당해 보육시설의 장”을 “해당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5인 이상의”를 “5명 이상 10명 이하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26조제2항) 중 “보육시설종사자가”를 “보육교직원이”로, 같은 조 제3항은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1호(종전의 제26조제3항제1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같은 항 제2호(종전의 제26조제3항제2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결산에”를 “결산의 보고에”로, 같은 항 제4호(종전의 제26조제3항제4호) 중 “그 밖에 보육시간 등 보육시설”을 “보육시간, 보육과정의 운영 방법 등 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26조제3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같은 조 제3항, 제4항,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운영위원회 회의는 운영위원 3명 이상의 요청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할 수 있다.

⑥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운영 규칙으로 정한다.

제5장의 제목 “방과 후 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방과 후 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으로 한다.

제27조를 제29조로 하고, 제29조(종전의 제27조)의 제목 “(방과 후 보육시설의 설치)”를 “(방과 후 어린이집의 설치)”로, 같은 조 본문 중 “방과 후 보육시설”을 “방과 후 어린이집”으로, “영유아 보육시설, 사회복지법상의 복지시설”을 “영유아 어린이집,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로, “개·보수 하여”를 “개·보수하여”로 한다.

제28조를 제30조로 하고, 제30조(종전의 제28조)의 제목 “(보육시설의 기준)”을 “(어린이집의 기준)”으로, 같은 조 본문 중 “방과 후 보육시설”을 “방과 후 어린이집”으로, 「영유아 보육법 시행 규칙」을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으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29조를 제31조로 하고, 제31조(종전의 제29조) 중 “각호”를 “각 호”로, “보육 시설”을 “어린이집”으로, “범위 안에서”를 “범위에서”로, 같은 조 제1호(종전의

제29조제1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같은 조 제5호(종전의 제29조제5호) 중 “보육교직원의”를 추가하고, 같은 조 제7호를 제9호로 하고, 제9호(종전의 제29조제7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7. 보육교직원의 사기 진작과 처우개선에 필요한 비용
- 8. 보육프로그램의 개발비용

제30조를 삭제한다.

제31조를 제32조로 하고, 제32조(종전의 제31조)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같은 조 제3호(종전의 제31조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32조를 제33조로 하고, 제33조를 제34조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제1조(목적)	-----	「영유아보육법
(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	
<u>의하여</u>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u>따라</u>	-----	
(이하 “구”라 한다) 보육의	공공성을		-----	

확대하며 영유아 및 아동의 보호와 교육의 질 향상을 통하여 건강한 <u>사회성원</u>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 <u>사회 구성원</u>----- ----- <u>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u>-----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u>영유아</u>"라 함은 6세 미만의 취학전 아동을 말한다. 2. "<u>보육</u>"이라 함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특성에 <u>적합한</u> 교육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u>보육시설</u>"이라 함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u>시설</u>을 말한다. 4. "<u>보호자</u>"라 함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5. "<u>보육시설 종사자</u>"라 함은 <u>보육 시설</u>에서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u>보육시설</u>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u>보육시설의 장</u>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u>종사자</u>를 말한다. 6. "<u>방과 후 보육</u>"이라 함은 맞벌이 부부의 자녀 등 방과 후 보호가 필요한 초등학교 아동을 중심으로	제2조(정의) ----- <u>뜻은</u> -----. 1. "<u>영유아</u>"란 ----- -----. 2. "<u>보육</u>"이란 ----- ----- <u>맞는</u> ----- 제공하는 <u>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u> 사회복지서비스를 -----. 3. "<u>어린이집</u>"이란 ----- ----- <u>기관</u> -----. 4. "<u>보호자</u>"란 ----- ----- -----. 5. "<u>보육교직원</u>"이란 어린이집----- ----- ----- <u>어린이집</u>----- ----- <u>어린이집의 원장</u> ----- ----- <u>직원을</u>-----. 6. "<u>방과 후 보육</u>"이란 ----- ----- -----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책임) ① (생략) ② 구청장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u>적정한 보육시설</u> 을 확보하여야 한다. <u><신설></u>	제3조(책임) ① (현행과 같음) ② ----- <u>적절한 어린이집</u> -----. <u>③ 보육교직원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구 보육정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u>
<u><신설></u>	제4조(보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u>구청장은 보육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육사업의 기본방향, 어린이집의 설치 및 수급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보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u> ② <u>보육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공청회 등을 통해 구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u>
제2장 보육정책위원회	제2장 보육정책위원회
제4조(설치) 법 제6조의 규정에 <u>의하여</u> 구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설치) ----- <u>따라</u> ----- -----.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u>15인 이내</u> 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u>각호의 1</u> 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생략) 2. <u>보육시설의 장</u> 및 보육교사 대표 3. ~ 5. (생략) ③ (생략)	제6조(구성) ① ----- ----- <u>1명</u> ----- <u>15명 이하</u> 의 -----. ② ----- <u>각 호의 어느 하나</u> ----- ----- . 1. (현행과 같음) 2. <u>어린이집의 원장</u> ----- 3. ~ 5.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가정복지과장으로 한다.	④ ----- 1명----- -----.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u>보육정보센터</u> 의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 2. (생 략) 3. <u>구립 보육시설</u> 의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 4. <u>보육시설</u>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5. <u>보육시설</u> 장의 업무정지 및 보육 교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 6. <u>방과 후 보육시설</u> 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u>기타</u> 보육에 관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기능)----- 각 호----- -----. 1. <u>보육정보센터·영유아플라자</u> 의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 2. (현행과 같음) 3. <u>구립어린이집</u> ----- ----- 4. <u>어린이집</u> ----- ----- 5. <u>어린이집 원장</u> ----- ----- 6. <u>방과 후 어린이집</u> ----- ----- 7. <u>그 밖에</u> ----- -----부치는 사항
제7조 (생 략)	제8조 (현행 제7조와 같음)
제8조 (생 략)	제9조 (현행 제8조와 같음)
제9조 (생 략)	제10조 (현행 제9조와 같음)
제10조(위원의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위원의 수당) ----- ----- <u>대해서는</u> ----- <u>범위에서</u> -----. ----- ----- -----.
제3장 <u>보육정보 센터 설치 및 운영</u>	제3장 <u>보육정보센터 · 영유아플라자</u> <u>설치 및 운영</u>

<u>제11조(설치 및 운영)</u> ①구청장은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u>보육정보센터</u>(이하 "보육정보센터"라 한다)를 <u>설치·운영한다</u>. ② · ③ (생략)	<u>제12조(설치 및 운영)</u> ① ----- ----- -----<u>보육정보센터</u> <u>및 영유아플라자</u>----- -----<u>설치·운영하여야 한다</u>. ② · ③ (현행과 같음)
<u>제12조(기능)</u> 보육정보센터는 다음 <u>각호</u>의 업무를 수행한다. 1. · 2. (생략) 3. <u>보육시설종사자</u>에 대한 상담 및 구인·구직 정보의 제공 4. <u>보육시설</u> 이용자에 대한 안내·상담 및 교육 5.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에 대한 정보의 제공 6. · 7. (생략) 8. 구민의 보육수요 및 욕구조사, <u>보육시설</u> 이용실태 조사 9. <u>기타</u> 보육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u><신설></u>	<u>제13조(기능)</u> ① ----- <u>각호</u>-----. 1. · 2. (현행과 같음) 3. <u>보육교직원</u>----- ----- 4. <u>어린이집</u> ----- ----- 5.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에 대한 <u>조력 및</u> 정보의 제공 6. · 7. (현행과 같음) 8. ----- <u>어린이집</u> ----- 9. <u>그 밖에</u> ----- ----- ② <u>영유아플라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u>. <u>1. 영유아 및 부모 포털사이트 구축</u> <u>2. 젊은 부모들의 모임 및 정보교환 장소 제공</u> <u>3. 부모들에게 단계별 양육방법, 놀이 지도 등 프로그램 운영</u> <u>4. 각종 생활체험을 통해 아동의 근육 발달 등 성장지원</u> <u>5. 자녀양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u>

	<u>상담 및 해결</u> <u>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u>
제13조(구성) ①·② (생략) ③보육전문 요원은 영 제15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공개채용을 통해 구청장이 임면한다. 다만, 보육정보센터를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보육전문요원 및 기타 종사자는 보육정보센터의 장이 공개채용을 통해 <u>임면후구청장에게보고</u> 하여야 한다. ④ (생략) <u><신 설></u>	제14조(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u>각 호의 어느 하나</u>----- ----- ----- ----- 그 밖의 ----- -----<u>임면 후 구청장에게 보고</u> -----. ④ (현행과 같음) <u>⑤ 보육정보센터의 장은 영유아플라자의 장을 겸임할 수 있다.</u>
제14조 (생략)	제15조 (현행 제14조와 같음)
제15조 (생략)	제16조 (현행 제15조와 같음)
제4장 <u>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u>	제4장 <u>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u>
제16조(구립 보육시설의 설치) ①구청장은 <u>구립보육시설</u>을 설치할 때에는 보육 수요와 시설수를 감안하여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가급적 1개동에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보육수요 조사를 실시하여 일정한 수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u>구립보육시설에 장애아 보육시설과 야간보육시설</u>을 설치할 수 있다.	제17조(구립어린이집의 설치) ① ----- <u>구립어린이집</u>----- ----- ----- ----- -----. ② ----- ----- ----- <u>구립어린이집-- 장애아 어린이집-- 야간어린이집</u>----- -----.

제17조(구립보육시설의 명칭) 구에서 설치하는 <u>보육시설</u>의 명칭은 "구립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18조(구립어린이집의 명칭)----- ----- <u>어린이집</u>----- -----.
제18조(위탁운영) ①구청장은 법 제24조의 <u>규정에 의하여 구립보육시설</u>을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위탁은 공개경쟁의 <u>방법에 의한다</u>. ②<u>구립보육시설</u> 위탁의 경우 수탁 운영자의 선정기준 및 공개모집에 관한 <u>내용 방법과 절차</u> 등에 대하여는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③<u>구립보육시설</u>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자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자를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 라 한다)로 지정한다. ④제3항의 <u>규정에 의한</u> 위원회의 심의항목에는 보육관련사업 운영 실적, 수탁자의 공신력 및 재정능력, <u>보육시설</u> 운영계획, 대표자 및 <u>보육 시설장</u>의 전문성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심의항목 배점 및 절차 등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한다.	제19조(위탁운영) ① -----제24조에 따라 <u>구립어린이집</u>----- ----- ----- -----<u>방법으로 한다</u>. ② <u>구립어린이집</u> ----- ----- -----<u>내용, 방법과</u>----- -----. ③ <u>구립어린이집</u>----- ----- ----- -----. ④ 제3항에 따른----- ----- ----- <u>어린이집</u> -----<u>어린이집 원장</u>----- ----- ----- -----.
제19조(위탁계약) 구청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중 관리책임 및 <u>기타</u>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하며 시설의 보호와 <u>적절한</u>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20조(위탁계약) ----- ----- <u>그 밖에</u> ----- ----- ----- <u>적절한</u> -----

제한할 수 있다.	-----.
<u>제20조</u> (생략)	<u>제21조</u> (현행 제20조와 같음)
<u>제21조</u> (수탁자의 의무) ①수탁자는 <u>보육시설</u> 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 <u>의한</u> 규정 및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u>구립 보육시설의 장</u> 은 영아장애아 시간연장형 보육 등 취약보육을 우선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보육의 우선 제공을 준수하고 관내거주 아동을 <u>우선보육</u> 하여야 한다. ③ ~ ④ (생략) ⑤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⑥ · ⑦ (생략)	<u>제22조</u> (수탁자의 의무) ① ----- <u>어린이집</u> ----- ----- <u>따른</u> ----- -----. ② <u>구립어린이집의 원장</u> ----- ----- ----- ----- ----- <u>우선 보육</u> 하여야-----. ③ ~ ④ (현행과 같음) ⑤ ----- ----- ----- -----. ⑥ · ⑦ (현행과 같음)
<u>제22조</u> (생략)	<u>제23조</u> (현행 제22조와 같음)
<u>제23조</u> (위탁의 취소) ①구청장은 위탁 <u>기간중</u> 이라도 다음 <u>각호의 1</u> 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5. (생략) ② · ③ (생략)	<u>제24조</u> (위탁의 취소) ① ----- <u>기간 중</u> ----- <u>각 호의 어느 하나</u> ----- ----- <u>발생한 경우에는</u> ----- -----. 1.~5.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u>제24조</u> (지도감독) ① (생략) ②구청장은 제1항에 <u>의한</u> 지도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지시, 경고, <u>종사자</u> 의 해임 요구 및 변상, 위탁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u>제25조</u> (지도감독) ① (현행과 같음) ② ----- <u>따른</u> ----- ----- <u>보육교직원</u> ----- ----- -----.

<u><신 설></u>	<u>제26조(보육교직원의 임면 등)</u> <u>① 구립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은 법 제21조에 따른 자격을 가진 자로서 공개채용을 통해 구청장이 임면한다. 다만, 시설을 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보육교직원은 해당 법인 등의 대표가 임면한다.</u> <u>②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육교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u>
<u>제25조(보육시설 운영위원회의 설치)</u> <u>보육시설의 장은 보육시설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여 지역실정과 특성에 맞는 보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보육 시설에 보육시설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u>	<u>제27조(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설치)</u> <u>어린이집의 원장은 어린이집 -----</u> ----- ----- <u>어린이집에 어린이집운영위원회</u> ----- -----.
<u>제26조(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①운영위원회는 당해 보육시설의 장, 보육교사 대표, 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를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u> <u>②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보육시설 종사자가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u> <u><신 설></u> <u><신 설></u>	<u>제28조(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① ---</u> -----<u>해당 어린이집의 원장,</u> ----- ----- <u>5명 이상 10명 이하의</u> -----. <u>② -----보육교직원이 -----.</u> <u>③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u> <u>④ 운영위원회 회의는 운영위원 3명 이상의 요청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할 수 있다.</u>

③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u>보육시설</u> 운영 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2. <u>보육시설</u>의 예산 및 <u>결산</u>에 관한 사항 3. (생략) 4. 그 밖에 <u>보육시간</u> 등 <u>보육시설</u>의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신설>	⑤ ----- -----. 1. <u>어린이집</u> ----- ----- 2. <u>어린이집</u> ----- <u>결산의 보고</u>에 ----- 3. (현행과 같음) 4. <u>보육시간, 보육과정의 운영 방법 등 어린이집</u>----- 5. 그 밖에 <u>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u> ⑥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운영 규칙으로 정한다.
제5장 방과 후 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제5장 방과 후 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제27조(방과 후 보육시설의 설치) 구청장은 <u>방과 후 보육시설</u>을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되 기존의 <u>영유아 보육시설, 사회복지사업법상의 복지시설, 종교시설 및 학교시설</u> 등을 증·개축 또는 개·보수 하여 설치할 수 있다.	제29조(방과 후 어린이집의 설치) ----- <u>방과 후 어린이집</u>----- ----- ----- <u>영유아 어린이집, 「사회복지사업법</u> 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 ----- <u>개·보수하여</u>-----.
제28조(보육시설 기준) <u>방과 후 보육시설</u>이 갖추어야 할 시설기준 및 운영기준은 「<u>영유아 보육법 시행 규칙</u>」 제9조 및 제23조에 의한다.	제30조(어린이집 기준) <u>방과 후 어린이집</u>----- ----- ----- 「<u>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u>」----- ----- -----<u>따른다.</u>
제6장 비용	제6장 비용
제29조(비용의 보조 등) 구청장은 다음 <u>각호</u>에 정한 <u>보육시설</u> 운영에 필요한	제31조(비용의 보조 등) ----- <u>각 호</u>-----<u>어린이집</u> -----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u>보육시설</u>의 설치, 증·개축 및 개·보수비 2.~4. (생략) 5. 보수교육 등 교육훈련 비용 6. (생략) <신설> <신설> 7. 기타 구청장이 영유아 보육의 활성화 및 <u>보육시설</u>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 범위에서 -----. 1. <u>어린이집</u>----- 2.~4. (현행과 같음) 5. <u>보육교직원의</u> 보수교육 등 교육훈련 비용 6. (현행과 같음) 7. <u>보육교직원의 사기 진작과 처우 개선에 필요한 비용</u> 8. <u>보육프로그램의 개발비용</u> 9. 그 밖에 ----- ----- <u>어린이집</u>----- ----- -----
제30조(보육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 등) ①구청장은 교사연수, 선진지 견학등 보육시설 종사자의 사기진작과 처우 개선에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보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영유아 보육의 질적 향상에 노력하여야 하며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삭제>
제31조(보조금의 반환) 구청장은 <u>보육시설</u>을 운영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 2. (생략) 3. 허위 <u>기타</u> 부정한 방법으로	제32조(보조금의 반환) ----- <u>어린이집</u>----- 각호의 어느 하나----- -----. 1. · 2. (현행과 같음) 3. ---- <u>그 밖의</u>-----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	-----
제7장 보 칙	제7장 보칙
<u>제32조</u> (생 략)	<u>제33조</u> (현행 제32조와 같음)
<u>제33조</u> (생 략)	<u>제34조</u> (현행 제33조와 같음)